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 복기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746
----------	-------

발의연월일 : 2025. 12. 1.

발 의 자 : 권영진 · 복기왕 · 황운하
문진석 · 최혁진 · 정준호
송재봉 · 이상식 · 이강일
조승환 · 김상훈 · 박용갑
진종오 · 이용우 · 우재준
김남희 · 곽상언 · 박정현
이종배 · 엄태영 · 서영교
남인순 · 허 영 · 김현정
의원(2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외·고속버스는 국민의 장거리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이나 최근 고속철도망 확충과 자가용 이용 증가 등으로 승객수가 지속 감소함에 따라 수익성이 높지 않은 지방의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노선이 폐선되거나 운행횟수가 줄어들어 지역 주민의 이동권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음. 시외·고속버스 사업은 원칙적으로 민간사업자의 면허에 기반한 민영제로 운영되지만 정부가 요금의 상한을 관리하고 다수의 사람을 수송해야 하는 대중교통인 특성상 사업자의 경영여건 개선과 국민의 장거리 이동권 보장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고, 단순히

수익성만을 기준으로 노선의 유지 필요성을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분야임. 향후 시외·고속버스 노선의 폐선과 운행횟수 감축 현상이 지속 및 확대될 경우, 수도권-지방지역 간, 지방거점도시-지방지역 간 교류가 단절되어 지방소멸이 점차 가속화되고, 낙후지역 주민의 생활권역도 축소되어 이들의 전반적 삶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그러나, 운행 지역이 전국 단위인 시외·고속버스는 구조적 특성상 운행 지역이 특정 지자체 관할 내로 한정되어 준공영제 등을 통해 운행손실의 대부분을 지자체로부터 보전받는 시내버스보다 지자체의 지원 및 관리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어 안정적인 운영기반이 부재하고, 법정 망계획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도로·철도와 달리 노선별 중요도, 시급성 등을 고려한 교통 네트워크, 이동권 관점에서의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개별 노선 단위의 관리에 그치고 있음.

이에, 지역 간 최소한의 광역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대중교통을 통한 전국적 교통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비록 수익성은 없으나 운행 또는 서비스의 개선이 필요한 시외·고속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필수노선”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수노선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재정지원 및 유류비 지원 등을 통해 버스노선의 운행안정성과 서비스를 제고하는 등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50조 제8항 신설, 제50조의2 신설 등). 아울러, 필수노선을 포함한 시외·고속버스 면허 및 노선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종합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근거도 마련하고자 함(안

제50조의3 신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필수노선”이란 국민에게 최소한의 지역 간 광역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운행 또는 서비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노선을 말한다.

제50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⑩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제2조에 따른 필수노선을 운행하기 위하여 유류를 구매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 기준·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필수노선의 지정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면허를 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75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중 광역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선을 필수노선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필수노선을 운행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제23조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통해 지역 간 교통편의가 제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필수노선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노선별 이용 현황, 대체 교통수단 여부 및 필수노선 지정에 따른 교통편의 제고 효과 등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 및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필수노선의 지정, 타당성 평가, 개선명령, 재정지원 등 필수노선의 관리와 관련한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의3(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종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관련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체계적 활용을 위하여 노선여객자

동차운송사업종합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종합정보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종합정보체계 구축·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교통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종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과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7. (현행과 같음) 10. “필수노선”이란 국민에게 <u>최소한의 지역 간 광역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운행 또는 서비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노선</u> <u>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노선</u> 을 말한다.
제50조(재정 지원) ① ~ ⑨ (생략) <u><신설></u>	제50조(재정 지원)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u>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제2조에 따른 필수노선을 운행하기 위하여 유류를 구매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 기준·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신 설>

제50조의2(필수노선의 지정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면허를 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75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중 광역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선을 필수노선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필수노선을 운행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제23조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통해 지역 간 교통편의가 제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필수노선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노선별 이용 현황, 대체 교통수단 여부 및 필수노선 지정에 따른 교통편의 제고 효과 등에 대한

<신 설>

타당성 평가를 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 및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필수노선의 지정, 타당성 평가, 개선명령, 재정지원 등 필수노선의 관리와 관련한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의3(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종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관련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체계적 활용을 위하여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

업종합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종합정보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종합정보체계 구축·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교통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종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과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